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85

발의연월일: 2025. 1. 21.

발 의 자:한민수·이학영·박민규

소병훈・김문수・황 희

임오경 • 박상혁 • 이건태

박용갑 • 이연희 • 박홍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「국회법」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가능함.

반면, 국무회의의 경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「국무회의 규정」 등에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와중에 소집, 개회, 안건상정, 회의록 작성 등 절차상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조차 불분명한 12.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·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음.

또, 행정안전부에서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작성·공개하고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 렵고, 국무회의 개최와 회의록 공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.

이에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, 회의장에서 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2(국무회의의 공개) ① 국무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의안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장에서 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무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2조의2(국무회의의 공개) ①
	국무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의
	안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
	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
	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
	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
	<u>다.</u>
	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무회
	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
	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장에
	서 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
	<u>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.</u>
	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
	사항 외에 국무회의의 공개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